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hob
----------	------

제출일자 : 2019. 6. 12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9년 7월 시행)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용어를 변경하여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등록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을 “등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24. ~ 2019. 6. 3. (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등록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을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4.(생략) 5.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경로대상·등록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100분의 50</u> 6.~ 8.(생략) ② ~ ④ (생략)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1.~ 4.(현행과 같음) 5. ----- · <u>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50</u> 6.~ 8.(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